

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“전기 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”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-143호 : 2007. 04. 09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  
기술표준원장

## 전기시험기관인정을위한추가기술요건 개정

| 구분 | 규격번호         | 규격명                   | 규격내용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개정 | KOLAS-SR-003 | 전기시험기관인정을위한<br>추가기술요건 | 별첨   |

별첨 : 1. 개정전문(KOLAS-SR-003)  
2. 신규대조표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기시험기관인정을위한 추가기술요건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-143호 : 2007. 04. 09)은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끝.